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
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이 개정(법률 제 21527호, 2026. 4. 7. 공포, 2026. 10. 8. 시행)됨에 따라,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신설되는 기후시민회의의 구성과 운영 등을 구체화 하고자 함.

또한 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온실가스 관련 각종 정보 및 통계 관리, 관련 통합플랫폼 구축·운영 등국립기후과학원의 업무 수행 범위를 정하고, 기후정책 연구협의체 운영을 위해 국공립 연구기관,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참여 기관의 범위를 정하고, 기후 위기 대응 연구 발전 연구, 협의체 구성원 간 연구 협력방안, 온실가스 배출 부문별 데이터 표준화 연구 등 협의 사항에 대해 정하고자 함.

한편,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 예측을 위한 정보의 제공을 구체화하여 복합재해 등 심화하는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, 국가·지자체 적응대책 수립 등에 활용하고자 함.

이외에도, 임업, 산림분야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관장기관 및 온실가스 정보에 대한 관리 주체를 산림청으로 일원화 하고, 탄소중립도시 지원기구에 대한 업무 위탁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기후시민회의의 구성과 운영 등 (제13조의3 신설 등)

- ‘기후시민회의’의 규모(100~300명) 및 분과 단위 구성·운영을 정하되, 인구비례 이상으로 미래세대를 추가 배정할 수 있도록 규정
- ‘기후시민회의’의 제안을 위원회가 심의·의결하여 각 기관의 업무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토록 함

나. 임업, 산림 분야 관장기관 변경(제18조 제1항 개정 등)

- 임업 분야 ‘온실가스 목표관리제’관장기관으로 산림청을 명시하고, 해당 분야 국제감축사업, 탄소중립 사업 위탁주체도 산림청으로 일원화

다. 국립기후과학원의 업무·운영 (제39조의2 신설)

- 기존 온실센터 업무에 감축목표 설정 연구, 기후 적응 업무등을 추가하여 기후 정책연구 총괄·조정기관으로서 업무 범위 설정

라. 기후정책 연구협의체의 구성·운영 (제39조의3 신설)

- 국립기후과학원장이 위원장을 맡고, 국공립 연구기관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이 참여토록 함
- 기후위기 대응 연구발전, 참여기관 간 연구 협력 방안, 부문별 데이터 표준화 및 연계 등을 연구협의체에서 논의

마. 기후변화 예측을 위한 세부 규정 신설 (제40조의2 신설)

- 실시 주기(매5년), 예측 분야 및 예측 결과에 대한 공표를 구체화하고, 국가·지자체의 법정계획 수립 등에 활용토록 함

바. 업무의 위탁 (제74조제20항 신설)

- '탄소중립도시 지원기구'에 대한 탄소중립도시 지정 및 지정취소 등의 업무 위탁 규정 신설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6. 6. 19. ~ 7. 29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의3(기후시민회의의 구성 등) ①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기후시민회의는 100명 이상 300명 이하의 참여자로 구성한다. 이 경우 인구 비례에도 불구하고, 「청년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과 「청년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중 10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을 추가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기후시민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후시민회의를 분과 단위로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는 법 제16조 제7호에 따라 심의·의결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.

④ 제3항에 따라 심의·의결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결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해당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.

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이행계획의 이행을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, 위원회는 필요시 제4항에 따른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.

⑥ 위원회는 기후시민회의 참여자의 학습 및 관련 정보의 효율적 처리, 정보 공유 및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하여 기후시민회의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후시민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1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사무처는 기후위기 대응 관련 정보 공유 및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제15조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.

1.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국립기후과학원

제18조제1항제1호 중 “농업·축산·식품·임업”을 “농업·축산·식품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산림청 : 임업 분야

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36조제1항”을 “법 제36조의2제1항”으로, “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의 장”을 “국립기후과학원장”으로 한다.

제39조제1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”를 “국립기후과학원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온

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장”을 “국립기후과학원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”를 “국립기후과학원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중 “농업·축산·산림”을 “농업·축산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”를 “국립기후과학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1항 중 “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”을 “국립기후과학원은”으로, “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”를 “국립기후과학원의”로 하며,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를”을 “국립기후과학원을”로 한다.

6. 산림청장: 산림 분야

제39조의2, 제39조의3 및 제40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9조의2(국립기후과학원의 업무·운영) ①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국립기후과학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국가 및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·흡수량, 배출·흡수 계수(係數) 등 온실가스 관련 각종 정보 및 통계의 산정·분석·검증·작성·관리와 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
2. 국내 온실가스 배출 현황과 전망에 대한 분석 및 연구
3.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 측정·감시 및 예측에 관한 조사·연구
4. 검증기관의 지정·관리 및 국제상호인정
5.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대한 협조 및 지원과

- 관계 중앙행정기관·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련 정보 및 통계 제공
6. 법 제8조의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및 이행 현황 및
진전사항을 위한 분석·연구
 7. 법 제26조제4항, 제27조제4항 및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
부의 작성·관리와 법 제36조에 따른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의 분석
·제공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통합플랫폼 구축 및 운영
 8.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(이하 “온실가스
종합정보관리체계”라 한다)의 구축 및 운영
 9. 법 제36조제1항 및 제77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·단기 체류 기후
변화 유발물질·간접 온실가스 통계 정보의 작성 및 관련 통계 정보
의 국제기구 보고에 관한 사항
 10.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
 11.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 구축 및 운영
 12. 법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책 또는 계획 추진을
위한 조사·연구
 13. 온실가스종합정보체계 구축, 온실가스 배출전망, 감축 목표 설정
및 이행, 온실가스 배출·감축량 검증, 기후위기 적응 연구 등 관련
국제협력
 14.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
인정하는 업무
- ② 국립기후과학원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

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공기관이나 관계 기관·단체·연구소 소속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39조의3(기후정책 연구협의체의 구성·운영) ① 기후정책 연구협의체의 위원장은 국립기후과학원장으로 하며, 기후위기 대응 연구를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가 참여한다.

1. 국공립 연구기관
2. 정부출연연구기관
3.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연구 추진을 위해 협의체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

② 기후정책 연구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.

1. 기후위기 대응 연구 발전에 관한 사항
2. 기후정책 연구협의체 구성원간 연구 협력에 관한 사항
3. 기후위기 대응 연구를 위한 부문별 데이터의 표준화 및 개선, 연계에 관한 사항
4.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관측 자료의 생산·공유 및 활용에 관한 사항
5.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기후정책 연구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40조의2(분야별 기후변화 영향 예측) ① 법 제37조의2에 따라 기후변화 영향을 예측하여야 하는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물관리
 2. 건강
 3. 산림·생태계
 4. 국토·연안
 5. 농수산
 6. 산업
 7.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
-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매 5년마다 분야별 영향 예측을 실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영향 예측을 실시할 수 있다.
1. 「기후·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른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가 갱신된 경우
 2. 법 제38조에 따른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 또는 변경된 경우
 3.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추가 예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 예측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계획 또는 대책을 수립·변경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.
1. 법 제10조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

2. 법 제38조에 따른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

3. 법 제40조에 따른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

4. 그 밖에 기후변화 영향과 관련된 분야별 법정계획

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 예측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정부출연연구기관, 공공기관 및 그 밖의 전문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.

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 예측 결과를 공표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이를 기후위험 공간정보로 구축하고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와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다.
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 예측의 방법, 절차, 결과의 활용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한다.

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장”을 “국립기후과학원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국립환경과학원장”을 “국립기후과학원장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.

제74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”을 “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·축산·식품”으로, “해당 호에서 정한 기관에 각각”을 “「농촌진흥법」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”로 하

고,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, 같은 조 제10항을 제21항으로 하고, 같은 항(종전의 제10항)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농림축산식품부장관”을 “산림청장”으로, “임업 분야의 다음”을 “다음”으로, “업무를 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의2”를 “업무를 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의2”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,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2호,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, 제3호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에 제2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업 분야의 온실가스관리목표설정등을 위한 자료의 검토·확인 및 기초자료의 작성
3. 제34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사업 보고내용의 검토
6. 법 제67조제4항에 따른 임업 분야의 교육·홍보
7. 법 제67조제5항에 따른 임업 분야의 전문인력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 지원
8. 법 제67조제6항에 따른 임업 분야의 대중매체를 통한 교육·홍보활동 지원
9. 법 제76조에 따른 임업 분야의 기후 위기 대응과 관련된 제도·정책에 관한 동향과 정보의 수집·조사·분석·제공의 지원
- ⑳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지원기구에 위탁한다.
 1.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 수립

지원

2.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탄소중립도시 지정 업무 지원
3.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탄소중립도시 조성 사업계획 수립·시행 지원, 이행점검·조사·연구
4.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탄소중립도시 지정 취소에 대한 검토 지원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3조의3(기후시민회의의 구성 등) ①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기후시민회의는 100명 이상 300명 이하의 참여자로 구성한다. 이 경우 인구 비례에도 불구하고, 「청년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과 「청년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중 10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을 추가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.</u> <u>② 위원회는 기후시민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후시민회의를 분과 단위로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</u> <u>③ 위원회는 법 제16조 제7호에 따라 심의·의결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.</u> <u>④ 제3항에 따라 심의·의결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결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서면으로</u>

제14조(사무처의 운영 등) ① ~
 ④ (생략)
<신설>

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해당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.

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이행계획의 이행을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, 위원회는 필요시 제4항에 따른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.

⑥ 위원회는 기후시민회의의 참여자의 학습 및 관련 정보의 효율적 처리, 정보 공유 및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하여 기후시민회의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후시민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14조(사무처의 운영 등) ① ~
 ④ (현행과 같음)
⑤ 사무처는 기후위기 대응 관련 정보 공유 및 기관 간 서비

제15조(기후변화영향평가) ① ~

④ (생 략)

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기후변화 영향평가 결과를 검토할 때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1.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

2. (생 략)

3. 「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19조에 따른 국립환경과학원

4. ~ 7. (생 략)

⑥ (생 략)

제18조(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목표관리)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문별 중앙행정기관(이하 “부문별관장기관”이라 한다)의 장은 해당 호에서 정한 분야별로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(이하 “온실가스관리목표”라

스 연계 등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제15조(기후변화영향평가) ① ~

④ (현행과 같음)

⑤ -----

-----.

1.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국립기후과학원

2.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4. ~ 7. (현행과 같음)

⑥ (현행과 같음)

제18조(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목표관리) ① -----

한다)의 설정·관리와 법 제28조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승계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며,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를 총괄·조정한다. 이 경우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총괄·조정 업무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.

1. 농림축산식품부: 농업·축산·식품·임업 분야

2. ~ 5. (생략)

<신설>

②·③ (생략)

제24조(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 구성 등) ① (생략)

②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의 장으로 하고,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.

1.·2. (생략)

③ ~ ⑤ (생략)

제39조(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관리 등) ① 법 제

-----.

1. ----- 농업·축산·식품 -----

2. ~ 5. (현행과 같음)

6. 산림청 : 임업 분야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24조(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구성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 법 제36조의2제1항 --- 국립기후과학원장 -----

-----.

1.·2. (현행과 같음)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39조(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관리 등) <삭

36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(이하 “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(이하 “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체계”라 한다)의 구축 및 운영
2. 국가 및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·흡수량, 배출·흡수 계수(係數) 등 온실가스 관련 각종 정보 및 통계의 개발·분석·검증·작성·관리와 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
3.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대한 협조 및 지원과 관계 중앙행정기관·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련 정보 및 통계 제공
4. 온실가스종합정보체계 구축 관련 국제기구·단체 및 개발도상국과의 협력

② 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국가통계관리위원회와 지역통계관리위

제>

② -----
----- 국립
기후과학원-----

원회를 둔다.

③ (생략)

④ 제2항에 따른 지역통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장으로 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해야 한다.

1. 2. (생략)

⑤ ~ ⑦ (생략)

⑧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분야별로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를 매년 3월 31일까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해야 한다.

1. 농림축산식품부장관: 농업·축산·산림 분야

2. ~ 5. (생략)

<신설>

⑨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다음 각 호의
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----- 국립기후과학원장-----

-----.

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⑤ ~ ⑦ (현행과 같음)

⑧ -----

----- 국립기후과학원-----
---.

1. ----- 농업·축산 -----

2. ~ 5. (현행과 같음)

6. 산림청장: 산림 분야

⑨ -----

분야의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를 매년 3월 31일까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해야 한다.

1. ~ 4. (생략)

⑩ (생략)

⑪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보·통계를 분석·검증한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.

⑫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기관에 인력, 정보 제공 및 분석 등의 지원(제5호의 기관에 대해서는 정보 제공으로 한정한다)을 요청할 수 있다.

1. ~ 5. (생략)

⑬ (생략)

<신설>

----- 국립기후과학원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⑩ (현행과 같음)

⑪ ----- 국립기후과학원은 -----

----- 국립기후과학원의 -----
-----.

⑫ ----- 국립기후과학원을 -----

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⑬ (현행과 같음)

제39조의2(국립기후과학원의 업무·운영) ①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국립기후과학원은 다

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국가 및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·흡수량, 배출·흡수 계수(係數) 등 온실가스 관련 각종 정보 및 통계의 산정·분석·검증·작성·관리와 정보 시스템 구축·운영
2. 국내 온실가스 배출 현황과 전망에 대한 분석 및 연구
3.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 측정·감시 및 예측에 관한 조사·연구
4. 검증기관의 지정·관리 및 국제상호인정
5.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대한 협조 및 지원과 관계 중앙행정기관·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련 정보 및 통계 제공
6. 법 제8조의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및 이행 현황 및 진전사항을 위한 분석·연구
7. 법 제26조제4항, 제27조제4항 및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부의 작성·관리와 법

제36조에 따른 온실가스 정보
및 통계의 분석·제공 등을
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통
합플랫폼 구축 및 운영

8.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온실
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(이하
“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체계”
라 한다)의 구축 및 운영

9. 법 제36조제1항 및 제77조제
1항에 따른 온실가스·단기
체류 기후변화 유발물질·간
접 온실가스 통계 정보의 작
성 및 관련 통계 정보의 국제
기구 보고에 관한 사항

10.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기
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구축
및 운영

11.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기
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 구
축 및 운영

12. 법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
의 규정에 따른 대책 또는 계
획 추진을 위한 조사·연구

13. 온실가스종합정보체계 구
축, 온실가스 배출전망, 감축
목표 설정 및 이행, 온실가스

<신 설>

배출 · 감축량 검증, 기후위기

적응 연구 등 관련 국제협력

14.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

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

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
② 국립기후과학원은 업무 수행

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

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

체 소속 공무원과 공공기관이나

관계 기관 · 단체 · 연구소 소속

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

요청할 수 있다.

제39조의3(기후정책 연구협의체

의 구성 · 운영) ① 기후정책 연

구협의체의 위원장은 국립기후

과학원장으로 하며, 기후위기

대응 연구를 수행하는 다음 각

호의 기관 또는 단체가 참여한

다.

1. 국공립 연구기관

2. 정부출연연구기관

3.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

한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연구

추진을 위해 협의체에 참여할

필요가 있다고 기후에너지환

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

<신 설>

는 단체

② 기후정책 연구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.

1. 기후위기 대응 연구 발전에 관한 사항

2. 기후정책 연구협의체 구성원 간 연구 협력에 관한 사항

3. 기후위기 대응 연구를 위한 부문별 데이터의 표준화 및 개선, 연계에 관한 사항

4.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관측 자료의 생산·공유 및 활용에 관한 사항

5.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

6. 그 밖에 기후정책 연구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40조의2(분야별 기후변화 영향

예측) ① 법 제37조의2에 따라 기후변화 영향을 예측하여야 하는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물관리

2. 건강

3. 산림·생태계

4. 국토·연안

5. 농수산

6. 산업

7.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

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매 5년마다 분야별 영향 예측을 실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영향 예측을 실시할 수 있다.

1. 「기후·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른 국가 기후변화 표준시나리오가 갱신된 경우

2. 법 제38조에 따른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 또는 변경된 경우

3.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추가 예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 예측 결과를 다음

각 호의 계획 또는 대책을 수립
· 변경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
로 활용하여야 한다.

1. 법 제10조에 따른 국가 탄소
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

2. 법 제38조에 따른 국가 기후
위기 적응대책

3. 법 제40조에 따른 지방 기후
위기 적응대책

4. 그 밖에 기후변화 영향과 관
련된 분야별 법정계획

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분
야별 기후변화 영향 예측의 효
율적 수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
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정부
출연연구기관, 공공기관 및 그
밖의 전문기관에 필요한 자료의
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
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
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
여야 한다.

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분
야별 기후변화 영향 예측 결과
를 공표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
우 이를 기후위험 공간정보로
구축하고 기후위기적응정보관

제73조(권한의 위임)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위임한다.

1. ~ 7. (생략)

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제40조에 따른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 상시 측정·조사 및 공개에 관한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 장에게 위임한다.

③·④ (생략)

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.

1. 제32조제1항·제2항·제4항

리체계와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다.
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 예측의 방법, 절차, 결과의 활용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한다.

제73조(권한의 위임) ① -----

국립기후과학원장-----
-----.

1. ~ 7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국립기후과학원 장-----.

③·④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및 제5항에 따른 임업 분야 국
제감축사업의 사전 승인 및
사전 승인의 취소와 그 통보

2. 제34조제1항에 따른 임업 분
야 국제감축사업 보고내용의
검토

3.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
른 임업 분야 국제감축실적
이전의 사전 승인

4. 제39조제8항제1호에 따른 산
림 분야의 온실가스 정보 및
통계의 제출

제74조(업무의 위탁) ① ~ ⑦ (생
략)

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
8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
구분에 따른 분야의 온실가스관
리목표설정등을 위한 자료의 검
토·확인 및 기초자료의 작성
업무를 해당 호에서 정한 기관
에 각각 위탁한다.

1. 제18조제1항제1호의 농업·
축산·식품: 「농촌진흥법」
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
진흥원

제74조(업무의 위탁) ① ~ ⑦ (현
행과 같음)

⑧ -----
----- 제18조제1항
제1호에 따른 농업·축산·식
품 -----

---- 「농촌진흥법」 제33조에
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--
-----.

<삭 제>

2. 제18조제1항제1호의 임업:

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
관한 법률」 제29조의2에 따
른 한국임업진흥원

⑨ (생 략)

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
81조제2항에 따라 임업 분야의
다음 각 호의 업무를 「임업 및
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」
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
흥원에 위탁한다.

<신 설>

1. (생 략)

<신 설>

2. 3. (생 략)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삭 제>

⑨ (현행과 같음)

⑫ 산림청장-----
----- 다음 -----
----- 업무를 「임업 및
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
29조의2-----
-----.

1.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
업 분야의 온실가스관리목표
설정등을 위한 자료의 검토·
확인 및 기초자료의 작성

2. (현행 제1호와 같음)

3. 제34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
축사업 보고내용의 검토

4. 5. (현행 제2호 및 제3호와
같음)

6. 법 제67조제4항에 따른 임업
분야의 교육·홍보

7. 법 제67조제5항에 따른 임업
분야의 전문인력의 육성과 지
원에 관한 사업 지원

8. 법 제67조제6항에 따른 임업

<신 설>

⑪ ~ ⑲ (생 략)

<신 설>

분야의 대중매체를 통한 교육

· 홍보활동 지원

9. 법 제76조에 따른 임업 분야

의 기후 위기 대응과 관련된

제도·정책에 관한 동향과 정

보의 수집·조사·분석·제공

의 지원

⑪ ~ ⑲ (현행과 같음)

⑳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

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1조제2

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

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지원기

구에 위탁한다.

1.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탄소

중립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정

책 수립 지원

2.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탄소

중립도시 지정 업무 지원

3.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탄소

중립도시 조성 사업계획 수립

· 시행 지원, 이행점검·조사

· 연구

4.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탄소

중립도시 지정 취소에 대한

검토 지원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환경부 기후전략과	
연 락 처	(044) 201 - 6652